

창원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2가단121523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창원지방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나111968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2가단121523 판결

전문

원 고 경남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형률

피 고 1. A

2.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케이 담당변호사 이상훈

변론종결 2023. 6. 15.

판결선고 2023. 8. 10.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5,559,104원 및 그 중 15,203,810원에 대하여 2022. 3. 17.부터 2022. 12. 8.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21. 2. 2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21. 12. 30. 접수 제17094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피고 A과 2019. 9. 30.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A은 원고의 보증하에 같은날 C은행에서 15,000,000원의 대출을 받았다. 피고 A은 2021. 12. 1. 이자 연체를 원인으로 한 신용보증사고를 내어 C은행에서 2022. 1. 21.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 통지를 하고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하여, 원고가 2022. 3. 17. 피고 A의 대출원리금 15,203,81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피고 A은 2021. 12. 30. 피고 B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2021. 2. 26.자)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피고 A은 이자 연체를 이유로 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기 약 9개월 전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B에게 채권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런데 당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던 상황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 B은 악의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다. 판단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64038 판결 등 참조).

2) 원고와 피고 A의 신용보증약정이 이미 2019. 9. 30. 체결되어 있었고, 실제로 피고 A이 2021. 12. 1.부터 이자를 연체하여 C은행에서 신용보증사고 통지를 하고, 원고가 2022. 3. 17. 대출원리금 15,203,810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구상금채권을 취득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각 증거와 이 법원의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2021. 2. 26.1) 당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가까운 장래에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 A은 2015년경부터 'G'라는 상호로 덤프트럭 사업을 운영하면서 그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도 받고 피고 B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에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가압류 된 내역이 없고, 2005년부터 근저당권 설정도 없는 상태였다.

②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후 9개월의 기간 동안 피고 A이 이자를 연체한 자료는 없다.

③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2021. 2. 26. 기준 피고 A의 대출기관 채무는 F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 원금 8,403,773원, D 대출 원금 3,697,588원 및 443,563원, 원고가 보증한 C은행 대출 원금 15,000,000원, 합계 27,544,924원 정도라는 것이다.

④ 피고 A은 2021. 11. 4. 주식회사 E으로부터 300만 원의 신규대출을 받기도 하였다.

3) 결국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민정

1) 원고는 위 등기원인일자가 오기일 경우에 대한 가정적 주장을 한 바 있으나, 피고 B은 오기가 아니라고 답변하였다.